

〈논문〉

## 법학전문대학원 진입장벽 완화 수단으로서의 특별전형제도: 그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崔 裕 卿\*\*

### 요 약

이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제도의 운영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제도상 문제와 한계를 노정(露呈)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9년부터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불가피한 고비용 교육구조를 취하게 됨으로써 총입학정원 가운데 일정한 비율을 신체적·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에게 할당하는 이른바 특별전형제도가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법률가양성 제도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법률가집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궁극적으로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에 대한 형평성과 신뢰도 제고를 추구하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7년간 특별전형 입학자는 총입학정원의 약 6.14%로, 제1회부터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약 5.1%를 차지했다. 이들은 로펌과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비롯해 사기업과 공공영역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는 계층을 충분히 포섭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한편, 특별전형제도는 각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복잡하고 상이한 세부유형과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법학전문대학원들이 특별전형 지원자들이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특별전형제도가 고비용 교육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설계된 점을 고려한다면, 신체적 취약계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취약성’을 기준으로 통일적인 유형과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소득’ 지표 외에 지역, 부(富), 가족의 교육력(教育歷), 중·고등교육정보 등 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개발하여 법학전문대학원들의 자율적인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특별전형제도 운영과정상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특별전형 지원자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진위 조사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한다.

\* 이 논문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15년 10월 12일 주최한 <법학전문대학원 성과와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서울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J.S.D.).

나아가 현행 특별전형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가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여부는 중·장기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야 할 문제다. 이 글은 특별전형제도의 법적 근거와 세부 유형(II.), 특별전형제도의 운영현황 및 성과(III.), 그리고 정책적 함의와 개선방안(IV.)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어: 특별전형제도, 법학전문대학원, 법률가 양성제도,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다양성

## I. 들어가며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 제정된 이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운영된 지 7년이 지났다. 이로써 종래 ‘시험’을 통한 소수의 법조인 선발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 체제로 전환되었으며<sup>2)</sup> 최근 제8회 신입생을 선발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둘러싼 이해대립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을 뿐 아니라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원색적인 비방<sup>3)</sup>과 갈등으로

- 
- 1) 이 글에서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다변화되고 있는 법 전문직(legal profession)의 분화 현상을 정확히 기술하는 개념으로 ‘법조인’ 개념에 갈음하여 ‘법률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의식적으로 ‘법조인’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법률가’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초기 논문으로는 한상희, “(법률가 충원제도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변호사의 적정수” **법과 사회**, 제11권(1995), 38-70면이 있으며 그 외에 이국윤, “법률가집단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 문제를 화두로 삼아”, **한국의 현상과 인식**, 통권 제79호(1999), 199-139면 및 동 저자, “한국 법률가의 탄생 공간”, **저스티스**, 통권 제67호(2002), 154-174면, 한인섭, “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인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2002); 김종철,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제도 개혁의 방안: 개혁의 하드웨어적 측면”, **법과 사회**, 제24권(2003), 55-81면; 한인섭, “변호사의 직업윤리의 정립과 교육: 기초발제: 법조비리와 법률가 윤리”, **법과 사회**, 제29권(2005), 9-19면; 김창록·이진국, “사법개혁 논의과정에서의 법률가지역간의 갈등구조 - ‘로스쿨’ 제도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형사정책연구원(2005) 등이 있다. 최근 연구로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학연구소가 수행한 「2014 대한민국 법률 직역의 구조와 법률가 의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재협·이준웅·황현정,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 -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2호(2015. 6), 367-411면도 참조.
- 2) 법조인양성제도 개혁과정은 김선수, **사법개혁 리포트**, 박영사(2008); 김창록, **로스쿨을 주장하다: 한국로스쿨 탄생의 기록**, 유니스토리(2013), 367-411면 참조.

치한다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석사전문대학원으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지원할 수 있고, 각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엄격한 설치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비용(高費用) 교육구조를 취하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고비용구조에 대한 문제점은 2000년대 중반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및 법학교육위원회에 걸쳐 논의되었지만, 7) 총입학정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및 지역적 안배 등 후속적 문제들에 가려진 채 상대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해 왔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시행 이후에도 「변호사시험법」 제정이나 8) 변호사시험 합격률, 예비시험제도 도입 여부

- 
- 3) 예를 들어 사법시험을 이른바 ‘희망의 사다리’ 또는 ‘개천의 용’을 탄생시키는 제도에 비유하는 데 비해 법학전문대학원을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로 폄하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 4) 2015년 12월 현재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3개의 사법시험법 법률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최근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사법고시를 2021년까지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2015. 12. 3)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전면 자퇴를 결의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변호사시험 출제 등을 거부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하고 있다. 법률신문, 2015년 12월 7일자, “로스쿨 학생들 ‘법무부 사과’ 촉구 ‘전원 자퇴’ 강행”; 헤럴드경제, 2015년 12월 10일자, “[사시폐지 유예 발표 일주일②] 두 쪽으로 갈라진 법조계 ... 소송 전 비화조짐까지”; 연합뉴스, 2015년 12월 7일자, “시위·고발·삭발 ... 법조계 사시-로스쿨 ‘혈투’”; 국제신문, 2015년 12월 14일자, “깊어지는 사시 갈등 ... 로스쿨 재학생 1000명, 검사 첫 단추 기말시험 응시거부” 등 참조.
- 5)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 이때 학사학위란 반드시 정규 대학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방송통신대, 독학사, 또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6) 법학전문대학원이 고비용의 교육과정이라는 평가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래 사법시험 응시요건은 대학 졸업(2006년 사법시험부터는 법학교목 35학점 이수율 포함)이나 정규의 전문석사과정 이수를 요하지 않은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을 기준으로 전문대학원의 연간 1인당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이나 경영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이 각각 15,556(천 원) 및 19,905(천 원)인 데 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은 15,321(천 원)이다. 반면 의학전문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지급액은 각각 평균 3,262(천 원)과 2,916(천 원)인 데 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평균 장학금 지급액이 6,377(천 원)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서 다른 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비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 16면 참조.
- 7) 국회사무처, 제258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3호(2006. 2. 15), 8면, 30면, 33면; 제269회(정기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7호(2007. 10. 26), 10-11면; 제28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6호(2009. 4. 22), 28면; 제282회 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2009. 4. 29) 9면, 12-13면 등; 박선영, “진입장벽 높은 로스쿨은 위험적이고, 실무교육도 미흡해”, **고시계**, 제55권 제8호(2010. 8), 84-86면 참조.

와 사법시험제도 존치 등이 첨예한 갈등 속에 논의된 반면 특별전형제도 자체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정작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필자는 지난 7년간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경험적인 자료 및 통계로 확인함으로써 그 제도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일부 재구성하고, 일부 선행연구<sup>8)</sup> 및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였다. 특히 특별전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그 현황을 정확히 노정(露呈)할 필요를 인식하고 ①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취약계층의 현황, ② 변호사시험 합격률, ③ 법률가 지역분포 등을 분석하였다. 보다 균형적인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종래 사법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나아가 사법연수원 입소자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율과 현황 등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겠지만, 이 같은 자료에 대한 접근과 취합이 용이하지 않아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특별전형제도 입학자의 학업 성취 과정상 어려움이나 법률가직역으로의 진출 이후 업무 형태 및 그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질적 연구방법 등을 동원한 추적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특별전형제도의 근거 법률과 각 법학전문대학원 별 특별전형 유형 및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II.), 그 운영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특별전형 입학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률가직역 진출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III.). 이를 토대로 현행 특별전형제도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는 한편, 법률가 양성제도의 진입장벽 완화와 법률가집단의 다양성 확보 방안을 제언함으로써(IV.) 특별전형제도가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사회 통합적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기 위한 시론적(試論的)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8) 변호사시험법은 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되어 2009년 8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이후 총 4회 변호사시험을 통해 2015년 현재 총 6,104명의 변호사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9) 특별전형제도에 관한 초기 분석으로는 이종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의 실태와 과제”, 연세 공공거버넌스학 법, 제2권 제2호(2011. 8)가 있으며, 박근용, “학생선발의 다양성과 장학제도 현황”,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국회의원 이춘석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2013. 6. 24), 32-38면 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

## II. 특별전형제도의 법적 근거와 유형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가장 유사한 법학 교육 체제인 미국의 로스쿨 제도는 일찍부터 학생 선발의 ‘다양성(diversity)’ 확보 방안을 논의해 왔고,<sup>10)</sup> 소수인종이나 소수민족 등 역사적으로 차별 받아온 결과 ‘정치적·사회적으로 과소대표된(underrepresented)’ 계층이 법률가 양성 체제로 유입될 수 있는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최근까지 이루어진 바 있다.<sup>11)</sup> 다만 이 같은 적극적 평등조치에 대해 다수를 이루는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반론 또한 우세하고,<sup>12)</sup> 연방대법원도 이른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고등교육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지표로서 ‘인종중립적(race-neutral)’ 기준인 ‘경제적 계층성(class-based)’ 지표를 강조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3)</sup> 반면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제도는 신체적·

10) 특히 ‘대학 진학’은 사회적으로 권력과 특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갈림)길로 인식되고 있으며, 입학 정책상 정치적·사회적으로 소외된 일정한 계층을 대학교육의 틀 속으로 견인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Neil Goldsmith, “Class-Based Affirmative Action: Creating New Model of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Washington University Journal of Law & Policy*, Vol. 34 (2010), p. 314. 그 외에도 미국 로스쿨 개혁론으로 특히 다양성 확보에 관한 연구로 William C. Kidder, “Does the LSAT Mirrors or Magnify Racial and Ethnic Difference in Educational Attainment?: A Study of Equally Achieving “Elite” College Students”, 89 *Cal. L. Rev.* 1055 (2001); Michelle J. Anderson, “Legal Education Reform, Diversity, and Access to Justice”, 61 *Rutgers L. Rev.* 1011 (2009); Paula Lustbader, “Painting Beyond the Numbers: The Art of Providing Inclusive Law School Admission to Ensure Full Representation in the Profession”, 40 *Cap. U. L. Rev.* 71 (2012); Alex M. Johnson, Jr., “Knots in the Pipeline for Prospective Lawyers of Color: The LSAT is Not the Problem and Affirmative Action is Not the Answer”, 24 *Stan. L. & Pol’y Rev.* 379 (2013) 등이 있다.

11) 과소대표되는 소수인종에 대한 할당제와 관련한 사법심사로는 *Regents of Uni. Cal. v. Bakke*, 438 U.S. 265 (1978); *Gratz v. Bollinger*, 5359 U.S. 244 (2003);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570 U.S. \_\_\_\_ (2013) 등 참조. 이에 관한 국내 문헌으로는 김복기,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위헌심사기준”, *노동법연구*, 제24호 (2008), 89-111면; 오대성, “미국의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대한 미시건대학 판결과 그 사회적 영향 - 그루터(Grutter) 사건과 그레츠(Gratz)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3권 제3호(2012), 205-245면.

12) 최근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위헌 여부를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의 발언이 문제되기도 했다. *The New York Times*, 2015. 12. 9. “Supreme Court Justices’ Comments Don’t Bode Well for Affirmative Action.”

13) 이러한 연구는 ‘보다 나은(a better)’ 적극적 평등조치를 재조명하면서 경제적 취약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평등실현조치의 일환이자 동시에 폭넓은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을 법률가 양성체도로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총입학정원 ‘내(內)’ 일정 비율을 이들에게 정책적으로 할당하는 이른바 특별전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1. 특별전형제도의 도입취지와 근거법령

### (1) 목적과 취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는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격을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제한하고 있어 대학 4년과 법학전문대학원 3년을 합한 총 7년간의 등록금과 생활비가 요구되는 점에서 이른바 고비용 교육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sup>14)</sup> 이에 특별전형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법률가양성 체도로 진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법률가집단의 다양성과 법률가 양성체도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국민이 보다 공정하고 다양하며 효율적인 사법시스템에 접근(access to justice)할 것을 추구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특별전형제도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중반 가속화된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부터 고려되었으며 법학전문대학원법과 동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제한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신적적 배려대상자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sup>15)</sup>

---

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대개의 경우 경제적 취약성은 기존의 문제시 되었던 인종적 취약성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로는 Jerome Karabel, “The New College Try”, *N.Y. Times*, Sep. 24, 2007, A 23; Tung Yin, “A Carbolic Smoke Ball for the Nineties: Class-Based Affirmative Action”, 31 *Loy. L. A. L. Rev.* 213 (1997); Neil Goldsmith, *supra* note 10; Richard D. Kahlenberg, “A Better Affirmative Action: State Universities that Created Alternative to Racial Preferences”, *A Century Foundation Report* (2012) 등이 있다. 반대로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한 고등교육의 다양성 확보의 오류나 문제점에 대한 연구로는 Deborah C. Malamud, “Class-Based Affirmative Action: Lessons and Caveats”, 74 *Tex. L. Rev.* 1847 (1996); Richard H. Sander & Stuart Taylor, Jr., *Mismatch: How Affirmative Action Hurts Students It's Intended to Help and Why Universities Won't Admit It*, Basic Books, 9.9.2012 edition (October 9, 2012).

14) 이호선,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2015. 6. 18) 자료집, 63면 이하 참조.

요컨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제도는 첫째, 고등교육 특히 석사전문대학원 형태의 법학교육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라는 점, 둘째, 인종이나 성별보다는 경제적 취약성, 사회·문화적 취약성을 고려하고 있는 점, 셋째, 2,000명으로 엄격히 제한된 총입학정원 ‘내(內)’에서 일정한 비율을 신체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경제적 소외 계층에게 정책적으로 할당함으로써 적극적인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sup>16)</sup>

(2)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특별전형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선발 유형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제도로 나누고 있다. 또한 법 제23조 제4항<sup>17)</sup>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sup>18)</sup>에서 특별전형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규정한다.<sup>19)</sup> 다만 특별전형의 유형과 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들은 매년 일반전형과 별도의 특별전형 기준을 비롯해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 서류 등에 관한 요건을 마련해 다음과 같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sup>20)</sup>

15)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지난 7년 사(史)를 반추해 보건대 입학총정원의 문제나 변호사시험 합격률, 최근의 사법시험제도 준치 등과 같은 치열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던 반면 특별전형제도의 설계와 운영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16)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연구로는 Kent Kostka, “Higher Education, Hopwood, and Homogeneity: Preserving Affirmative Action and Diversity in a Scrutinizing Society”, 74 *Dev. U. L. Rev.* 265 (1996); Richard D. Kahlenberg (ed.), *America’s Untapped Resource: Low-Income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Century Foundation Press (2004) 등 참조.

17)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학생선발) ④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②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19) 이종수, 앞의 글, 72-73면.

20)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선발비율과 인원 또는 구체적인 운영현황은 III.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2. 특별전형제도의 유형과 범위(2016학년도 기준)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선발대상과 기준은 각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입학전형계획에 반영토록 위임하고 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시행 당시부터 특별전형제도의 대상은 주로 신체적·경제적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이후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를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유형과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sup>21)</sup>

### (1) 신체적 취약계층

#### a. 신체적 장애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신체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이며,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가장 완화된 기준부터 엄격한 제한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범위로 특별전형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sup>22)</sup>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급~제6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즉 장애등급에 무관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급~제4급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sup>23)</sup>
-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지체장애인(1급~5급) 및 뇌병변장애인(1급~5급)으로 1년 이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b. 의상자

한편 신체적 장애인 외에도 ‘의상자’를 특별전형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

21) 2016학년도 기준 각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세부기준별 유형과 지원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공 입학전형 참조.

22) 각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인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기준은 [부록 1] 참조.

23) 한국외대의 경우 장애등급 4급 이상인 경우 자녀를 특별전형 대상자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의미한다. 특별전형의 경우에 따라서는 의상자의 가족 및 의사자의 유족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및 제5조)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된 자(1~9급, 장애등급에 무관함)
- 가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신체장애 등급이 4급 이상인 자
- 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신체장애 등급이 5급 이상인 자 등.

## (2) 경제적 취약계층

### a.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 정부로부터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재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그 자녀(또는 가구원)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제2조 제2호, 경우에 따라서는 동법 제5조에 정한 생계급여 또는 자활급여 수급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입학전형에 따라 가구원, 직계비속 등)를 기초생활수급자인 특별전형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sup>24)</sup>

### b. 차상위 계층 복지급여 수급권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포함되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는 대체로 복지급여 수급권자와 복지급여 비수급권자 중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으로 나뉜다. 먼저 복지급여 수급권자인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혹은 이와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또는 자녀)를 의미하며,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무가급여,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등이 포함된다.

<sup>24)</sup> 이화여대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의 재산세 합이 20만 원 이하이고, 부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합이 월 7만 원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c. 차상위 계층 복지급여 비수급권자 중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한편 복지급여 비수급권자 중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이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니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서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원을 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구 구성원 전원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sup>25)</sup>

d.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sup>26)</sup>

그 외에도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의료급여법상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그 자녀를 경제적 취약계층에 포섭하기도 한다.

(3)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이를 신체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경우로 나뉜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경우 그 대상을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한정하는 경우 및 그 자녀까지 인정하는 경우 등 기준이 상이하다. 본인인 경우에도 일정한 상이등급을 요건으로 하거나 자녀의 경우 경제적 취약성을 별도로 입증할 것이 요구되는 등 그 개념과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학교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은 국가유공자 외에 독립유공자도 특별전형 대상자로 인정하나 일반적이지는 않다.

a. 국가유공자

자세한 내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국가유공자의 지원 요건은 대략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이 경우 장애등급에는 제한이 없으나 별도로 경제적 취약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의한 상이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본인)

25) 중앙대 2015년 입학전형 기준.

26) 경희대와 아주대는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를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고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의한 상이등급 4급 이상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의한 상이등급 5급 이상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본인)

b. 독립유공자

한편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으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세대에 속한 자)를 말한다.

(4) 사회·문화적 취약계층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별 특별전형 유형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신체적·경제적 취약계층 외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을 특별전형 대상자로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부분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어 특별전형 지원대상이 폭넓게 확대되는 추세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조손가정 자녀(부·모 보호대상자)로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에서 성장한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결혼이민자, 귀화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8조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
- 「지방자치법」 상 읍·면 지역(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6년 전 교육과정(입학~졸업) 이수자로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단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출신은 제외), 고등학교 3년 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도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sup>27)</sup>
-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지)청장이 대학입학특별전형자로 인정한 자(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자녀)
- 「5·18 민주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지)청장이 대학입학

27) 영남대는 고등학교 3년 과정 이수자를 지원대상으로 함.

- 특별전형대상자로 인정하는 자(5·18 민주유공자 및 자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귀화자) 자 또는 그 자녀
  - 「의료급여법」수급권자 및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자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에서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인 지원이 아닌 장애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 연금을 받고 있는 자
  - 본인이 산업재해 1~3급인 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산업재해 1~3급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이 가족에 대한 사실상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국내 아동복지시설의 재원경력이 있는 자(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 된 곳)로 아동복지시설장이 모범학생으로 추천한 자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급 이상의 재해로 판정 받은 자
  - 만 19세 이전 부모 모두/일방이 사망한 자
  -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
  - 보훈관계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경제적 취약자(참전유공자 제외)

### Ⅲ. 특별전형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

특별전형제도의 운영실태와 성과는 어떠한가. 본 장에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인가 계획상 제시했던 특별전형제도 선발 예정 인원을 기준으로 실제 특별전형 입학자 및 비율을 살펴보는 한편, 특별전형의 세부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특별전형제도 운영현황

##### (1) 선발비율과 인원

2008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 기준’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비율이 모집정원의 5%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의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부여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법학전문대학원들은 모집정원의 5% 이상을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결과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계획상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선발비율은 평균 6.3%에 달했으며, 총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약 126명에 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첫해인 2009년 총 1,998명 가운데 1,873명이 일반전형으로, 125명이 특별전형으로 선발되었으며, 그 후에도 특별전형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sup>28)</sup>

<표 1>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인가 당시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총정원의 5~7.5%에 해당하는 인원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을 수립한 반면, 서울시립대와 전남대 및 제주대는 총정원의 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을 수립했다.

<표 1> 법학전문대학원 선발비율 및 인원(설치인가 계획상)

학교명	입학정원	특별전형 선발비율/인원	학교명	입학정원	특별전형 선발비율/인원
강원대	40명	5% / 2명	영남대	70명	5% / 4명
건국대	40명	5% / 2명	원광대	60명	7.5% / 5명
경북대	120명	5.8% / 7명	이화여대	100명	6% / 6명
경희대	60명	7% / 4명	인하대	50명	6% / 3명
고려대	120명	5% / 6명	전남대	120명	10% / 12명
동아대	80명	5% / 4명	전북대	80명	7% / 6명
부산대	120명	6.6% / 8명	제주대	40명	10% / 4명
서강대	40명	7.5% / 3명	중앙대	50명	7% / 4명
서울대	150명	6% / 9명	충남대	100명	5% / 5명
서울시립대	50명	10% / 5명	충북대	70명	5% / 4명
성균관대	120명	5% / 6명	한국외대	50명	6% / 3명
이주대	50명	6% / 3명	한양대	100명	5% / 5명
연세대	120명	5% / 6명	<b>평균</b>	<b>2,000명</b>	<b>6.3% / 126명</b>

\* 출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표적으로 서울시립대의 경우 지속적으로 총정원의 약 10~12% 가량을 특별전형자로 선발해 왔다. 한편 전남대는 2009년 12명(10%)을 선발하였다가 이듬해인 2010년과 2011년 각각 6명(5%)과 9명(6.9%)으로 감소했다가 2012년부터 각각 12명(9.8%), 10명(8.8%), 12명(10.9%)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제주대의 경우 2009년 개원 첫 해 4명(10%)이던 특별전형자 수가 2010년~2013년 5% 수준으로 하향조정 되었다가 2014년부터 다시 10% 수준으로 상향된 바 있다. 각 법학전문

<sup>28)</sup> 입학정원의 증감(전년도 대비 결원 보충 등을 원인으로 함)에 따라 약간의 편차를 보이기도 한다.

대학원 별 특별전형 선발비율은 향후 이 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 (2) 특별전형 세부기준별 유형 및 지원자격 분류

2016학년도 기준 특별전형 세부유형과 기준을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이 그 유형이 확대 및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sup>29)</sup>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신체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의 경우 지원자격이 ‘본인’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별도의 경제적 취약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외대의 경우 4급 이상의 장애 등급을 받은 자의 ‘자녀’까지 특별전형 지원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장애등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부터<sup>30)</sup> 장애등급 4~5등급을 신체적 배려 대상자로 분류하거나 1~3급 이내의 장애등급만을 특별전형 대상자로 한정하는 등<sup>31)</sup> 여전히 기준이 통일적이지 않아 특별전형 지원자들의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32)</sup>

둘째, 경제적 취약계층은 제도 도입 초기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크게 구분되던 것에서 점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및 자녀)와 차상위계층(및 자녀)로 확대되고 있고, 특히 후자의 경우 ① 복지급여 수급자(및 자녀)와 ② 복지급여 비수급자(및 자녀)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최근 ③ 우선돌봄자격자(및 자녀)에게까지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추세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비교하면 차상위 계층의 범위나 기준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실제 특별전형 입학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sup>33)</sup> 경제적 취약성을 입증하는 기준과 제출서류가 다르고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각종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없는 한계가 여전히 해

29) 각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함.

30) 2016년 특별전형을 기준으로 강원대, 건국대, 고려대 및 아주대가 그러하다. 한편 한국외대는 장애등급 4급 이상일 것을 요하면서 장애인 자녀도 특별전형 지원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3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북대, 서울대, 전남대를 비롯한 14개 법학전문대학원은 1~3급 이내의 장애인을 특별전형 지원자격으로 한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입학전형에서 밝히고 있다.

32) 2016년 특별전형을 기준으로 동아대, 영남대, 인하대, 제주대는 4등급을, 경희대 및 전북대는 5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강원대, 건국대 및 고려대는 장애등급에 제한이 없고(1~6등급), 그 이외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은 1~3급 이내의 장애인을 신체적 특별전형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33)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표 4> 등 참조.

소되지 않고 있다.

셋째,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들은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배려계층을 특별전형 지원 유형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정, 산업재해 보상보호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인정된 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2011년만 하더라도 특별전형 대상자로 분류된 예가 극히 드물다.

<표 2>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세부기준별 유형 및 지원자격 분류(2016학년도 기준)

학교명	신체적 장애			경제적 취약성			국가유공자		의상자		사회적 취약성					기타		
	장애 등급 제한 없음	1~3 등급	기 타	차상위계층			본인		자녀 (경제 취약)	신체 장애 1~4 등급	장애 등급 제한 없음	북한 이탈 주민	농어 촌지 역출 신자	아동 복지 시설	다 문 화 가 정		산업 재해	한부모 가정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자녀		우선 돌봄 자격자 및 자녀	등급 무관	추가 인정 조건										
				수급자 및 자녀	비 수급자 및 자녀													
1 강원대	○			○		○	○			○								
2 건국대	○			○	○		○		○			○				○		
3 경북대		○		○	○		○	5급				○						
4 경희대			5등급	○	○		○		○ 경제			○ 경제		○	○		○	의
									○ 신체 (5급)									
5 고려대	○			○	○		○		○			○	○	○	○		○	독, 보
6 동아대			4등급	○	○				신체 (4급)	○ 경제	○ 경제			○	○		○	
7 부산대		○		○	○	○	○		신체 (4급)									
8 서강대		○		○	○		○		신체 (4급)			○		○	○			
9 서울대		○		○	○		○			○	○		○	○				독
10 서울시립대		○		○	○		○		신체 (4급)		○		○				○	
11 성균관대		○		○	○		○		신체 (4급)		○ 경제		○	○	○	○	3급	○
12 아주대	○			○	○	○	○					○	○					의
13 연세대		○		○	○		○		신체 (4급)	○	○		○	○				독
14 영남대			4등급	○	○		○		경제	○	○		○	○				고, 독, 특, 5·18

학교명	신체적 장애			경제적 취약성				국가유공자		의상자		사회적 취약성					기타		
	장애 등급 제한 없음	1~3 등급	기 타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자녀	차상위계층		본인		자녀 (경제 취약)	신체 장애 1~4 등급	장애 등급 제한 없음	복합 이탈 주민	농어촌지역출신자	아동 복지 시설	다문화 가정	산업 재해		한부모 가정	
					복지급여 수급자 및 자녀	우선 돌봄 자격자 및 자녀	등급 무관	추가 인정 조건											
15	원광대	○		○	○		○	○	경제	○	○	○	○	○	○	○	○	○	고,독,특, 5·18
16	이화여대	○		○	○		○	○	경제			○	○	○	○				19
17	인하대		4등급	○	○		○		신체 (4급)			○	○		○				
18	전남대	○		○	○	○	○		신체 (3급)			○				○	○		소,외,근
19	전북대		5등급	○	○	○	○		신체 (4급)		○	○	○	○	○		○		독
20	제주대		4등급	○	○		○	○						○					
21	중앙대	○		○	○	○	○	○				○	○		○				
22	충남대	○		○	○		○		신체 (4급)		○								
23	충북대	○		○	○	○	○		신체 (4급)			○	○		○				
24	한국외대		4등급 /자녀	○	○	○			신체 (4급)	○		○							외
25	한양대	○		○	○		○		경제	○	○	○	○		○				독,보

\* 출처: 각 법학전문대학원 2016년도 입학전형

※ <표 2>의 ‘기타’ 항목의 약어는 각각 다음을 의미한다.

- ‘고’ =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지)청장이 대학입학특별전형자로 인정한 자 (영남대, 원광대)
- ‘근’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급 이상의 재해로 판정 받은 자(전남대)
- ‘독’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경제적 취약)(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전북대, 한양대)
- ‘보’ = 보훈관계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경제적 취약자(고려대, 한양대)
- ‘19’ = 만 19세 이전 부모 모두/일방이 사망한 자(이화여대)
- ‘소’ =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전남대)
- ‘5·18’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지)청장이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로 인정하는 자 (영남대, 원광대)
- ‘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허가 받은 자 중 귀화자 및 자녀(전남대, 한국외대)
- ‘의’ =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및 자녀(경희대)
- ‘특’ = 특수입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입무수행자 및 자녀(영남대, 원광대)



경제적으로 취약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경우 이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포함시킨 법학전문대학원이 중전 8개에서 20개로 증가했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족 자녀 또한 17개 학교가 채택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인정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8개 학교), 지방자치법상 읍·면(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14개 학교)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현격히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특별전형 입학자 가운데 사회·문화적 계층은 신체적·경제적 취약계층에 비하면 훨씬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484명의 특별전형 입학자 가운데 신체적 취약계층(62명, 12.8%)과 경제적 취약계층(376명, 77.7%) 외에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은 약 46명(9.5%)에 지나지 않았다. 그중에서 농어촌지역출신자(24명, 5%)와 국가유공자(15명, 3.1%)를 제외하면 소년소녀가장 3명(0.6%), 복지시설재원 경력자 2명(0.4%), 북한이탈주민 또는 한부모가정 각 1명(각각 0.2%)으로 나타났다.<sup>34)</sup>

최근 2년간 법학전문대학원들은 특별전형 대상을 폭넓은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으로 과감히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적으로 열악하거나 취약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경제적 취약성 판단에 대한 기준은 최근 3년 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이나 본인, 배우자, 부모의 최근 3년 간 재산세 총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통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경제적인 취약성 판단 기준을 확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기준도 학교 별로 상이하거나 여전히 복잡하다. 이를 큰 틀에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본인, 배우자, 부모 포함 가구 구성원 전부의 최근 3년 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이 각 해당 연도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이고,<sup>35)</sup> 본인, 배우자, 부모의 최근 3년 간 재산세 총 납부액(과세특례분 포함)이 연간 30만 원 이하인 자(경우에 따라서는 10만 원 이하)<sup>36)</sup>
- 본인, 배우자, 부모 포함 가구 구성원 전부의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이 각 해당 연도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의 3배 미만이고<sup>37)</sup>, 본인, 배

34) 박근용, 앞의 글, 36면.

35)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이것만을 판단기준으로 함.

36)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37) 다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의 2배 미만을 요구함.

우자, 부모의 최근 3년간 재산세 총 납부액(과세특례처분 포함)이 연간 30만 원 이하인 자<sup>38)</sup>

- 연간 소득 2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서 지방세납부액이 월 5만 원 이하인 세대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5만 원 이하이면서 지방세 납부액이 5만 원 이하인 세대 구성원<sup>39)</sup>
- 연간 소득 총액 3,000만 원 미만으로 세대 전체 지방세납부액이 연간 30만 원 이하인 세대 또는 종합소득의 경우 세대 전체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평균 10만 원 이하이면서 세대 전체 지방세 납부액이 연간 30만 원 이하인 세대<sup>40)</sup>

### (3) 특별전형 공통기준에 관한 계획(2017년 예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별 특별전형 유형과 기준은 여전히 복잡하고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sup>41)</sup> 특별전형제도에 관한 통일안은 지원자들의 예측가능성과 특별전형제도 운영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다. 교육부 통일안의 특징은 특별전형 공통기준으로 각각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하고, 별도의 자율기준(안)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종래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유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sup>42)</sup>

#### a. 공통기준

교육부의 공통기준에 따르면 신체적 취약자 ‘본인’만을 특별전형 지원자로 한정하면서도 ‘장애등급 6급 이상’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장애 등급 구분을 없앴다. 이는 종래 각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장애등급 1~3급, 4급 이상, 5급 이상 또는 장애등급

38) 고려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2016학년도 입학전형 기준.

39)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학년도 입학전형 기준.

40)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2016학년도 입학전형 기준.

41) 공통기준(안)은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들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 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기준 통일된다 -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 마련, 2017학년도 실시 - ”(2015. 5) 참고.

42) 위 교육부 보도자료 1-2면.

구분 없음 등 각기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던 것과 비교하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경제적 배려 대상은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및 동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를 공통기준으로 한다. 끝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학교 자체 기준)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학교자체 기준)를 공통기준으로 분류함으로써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은 공통기준에 따른 특별전형 유형을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 b. 자율기준

통일안은 두 가지 자율기준을 통해 종래 경제적·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인정된 특별전형 대상을 “기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사회적 약자로서 대학에서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가급적 다양한 계층이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가령 경제적 배려대상으로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가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및 기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인정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지원법률」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업재해보상 보험법률」에 따른 산업재해 대상자, 「지방자치법률」에 따른 농·어촌지역 출신자, 「아동복지법률」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 경력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기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사회적 약자로서 대학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

### 2. 특별전형 선발현황(2009-2014)

지난 7년 간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선발된 입학자는 약 759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 대비 약 6.14%에 이른다.

<표 3>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현황(단위: 명, %)

대학명	정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선발 인원	선발 비율	선발 인원	선발 비율	선발 인원	선발 비율	선발 인원	선발 비율	선발 인원	선발 비율	선발 인원	선발 비율	선발 인원	선발 비율
전체 평균		125	6.25	116	5.80	124	5.93	134	6.41	128	6.10	132	6.37	759	6.14
국립대 평균		61	7.36	53	6.33	57	6.54	66	7.65	59	6.78	65	7.06	361	6.48
사립대 평균		64	6.12	63	6.02	67	6.11	68	6.21	69	6.27	67	5.82	398	5.79
서울 시립대	50명	5	10.0	5	10.0	6	12.0	6	11.3	5	9.8	5	10.0	32 (최고)	10.5 (최고)
건국대	40명	2	5.0	2	5.0	2	4.65	2	4.55	2	4.65	1	2.56	11 (최저)	4.4 (최저)

\* 출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선발인원: 특별전형 대상 선발인원(정원 내 + 정원 외)  
 \*\*\* 선발비율: '09년 2,000명, '10년 2,000명, '11년 2,092명, '12년 2,092명, '13년 2,099명, '14년 2,072명, '15년 2,084명 대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125명, 116명, 124명, 134명, 128명, 132명이 특별전형으로 선발되었으며, 이는 해당 연도의 총 선발인원 대비 6.25%, 5.80% 5.93%, 6.41%, 6.10% 및 6.37%에 해당한다. 또한 국립대는 361명으로 약 6.48%, 사립대는 398명으로 약 5.79%를 차지하고 있어 사립대 보다 국립대의 특별전형 선발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최근 사립대학 특별전형 선발 비율은 평균 이하로 낮아진 반면 국립대학의 선발 비율은 평균을 상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759명이었으며 2,696명이 출원하여 평균 3.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교별로는 서울대(평균 6.2 대 1)와 아주대(평균 6.1 대 1) 등이 가장 높았고, 서울시립대(평균 5.4 대 1), 고려대(평균 4.7대 1) 및 영남대(평균 4.9 대 1)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부산대(평균 2.4 대 1), 제주대(평균 2.3 대 1), 전남대(평균 2.2 대 1), 충북대(평균 2.1 대 1)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표 4><sup>43)</sup>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전형 유형별로 기초생활수급자(및 그 자녀)와 차상위계층(및 그 자녀)이 총 473명으로 전체 특별전형 입학자의 약 73.2%

43) 선행연구로서 박근용, 앞의 글, 36면은 2009년~2013년 18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입학자 세부기준별 인원을 소개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2010년~2014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제출한 자료를 집계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자료에 따라 정리하였다.

(총 646명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 다음으로 신체적 취약계층이 약 13.8%(89명)를 차지한 반면 국가유공자와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을 모두 합한 비율이 약 12.8%(83명) 수준에 그쳤다.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은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포를 보이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출원자가 많지 않거나 이들 계층이 상당수 경제적 취약계층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44)</sup>

<표 4> 특별전형 세부기준에 따른 입학자 현황(2010~2014년)

연도	신체적 취약성 (장애인)	경제적 취약성		국가 유공자	사회·문화적 취약성					합계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자녀	차상위 계층 및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새터민)	농어촌 지역 출신자	아동 복지 시설	소년 소녀 가장	고업 계	
2010	23	30	50	7		14		1		125
2011	18	49	43	3	1	5			1	120
2012	19	53	54	2		8			2	138
2013	15	52	47	4	1	9	1		1	131
2014	14	38	57		23					132
합계	89	222	251		83					646

\* 출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3. 특별전형 입학자 장학금 지급현황(2009-2013년)

법학전문대학원들은 대체로 특별전형자에 대하여 지원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물론 전부 또는 일부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sup>45)</sup> 가령 2009년부터 2013년을 기준으로 특별전형자의 약 93.64%에 게 88.14%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sup>46)</sup>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진입장벽을 넘어서는 것 외에도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법률가 양성이라는 궁극적인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전형 입학자에 대한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4) 가령 노컷뉴스, 2013년 8월 6일자, “서울대 로스쿨 특별전형 ‘경제적 기준’ 강화”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15학년도 특별전형 지원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농·어촌 지역 출신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제적 취약성을 명시하도록 했다.

45) 법률저널, 2013년 6월 21일자, “로스쿨, 사회적취약자 운영 사례를 보니.”

46) [부록 2] 참조.

#### 4. 특별전형제도 운영성과

특별전형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특별전형 입학자의 변호사시험 합격 현황과 취업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 특별전형자 입학자 변호사시험 합격현황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회(2012년)부터 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총 6,104명 가운데 특별전형자는 약 315명(약 5.1%)인 것으로 나타났다.<sup>47)</sup>

<표 5> 특별전형 입학자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24개교)(단위: 명)

구 분	1회(2012년)	2회(2013년)	3회(2014년)	4회(2015년)	총(명)
총 합격자수	1,451	1,538	1,550	1,565	6,104
특별전형자	82	75	83	75	315

\* 출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무부

특별전형자 비율이 전체 입학정원의 약 6.13%를 차지하고 있고, 변호사시험 평균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별전형자들의 학업 성취도는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1회~제4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대부분 2009년~2012년 입학자들로서 같은 기간 특별전형자 총 499명을 기준으로<sup>48)</sup> 특별전형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평균 63.1%에 달했다. 일례로 제4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특별전형 합격자 총 75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포함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61명, 장애인 등 신체적 배려대상자 10명, 국가유공자 및 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4명 포함되어 있었다.<sup>49)</sup> 특별전형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과소대표 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평등실현 조치임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 수준이 적절한지, 법률가집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

47) 이러한 통계는 총 24개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집계한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하면 315명을 상회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8) <표 3> 참조

49)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자료 참조.

(2) 특별전형 입학자 취업현황

특별전형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는 특별전형입학자의 법률가직역 분포가 될 것이다. <표 6>은 2012년부터 2014년 특별전형제도 입학자의 취업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특별전형 입학자 가운데 약 98명(약 31.1%)이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변호사 개업 포함)로 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기업 28명(8.8%), 검사 및 재판연구원, 법무관 등으로도 약 24명(약 7.6%)이 진출했으며 공공부문인 중앙행정기관(9명), 그 밖의 국가기관(3명), 지방자치단체(2명), 공기업(4명), 기타 공공분야(7명)에 이르기까지 각종 법률가직역으로 진출한 것이 확인된다.<sup>50)</sup> 201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경력법관 선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중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가운데 37명이 법관에 임용되었는데, 이 가운데 특별전형자 입학자도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표 6> 특별전형 입학자 중 변호사시험 합격 후 사회진출 현황(21개교, 2012~2014년)

구분	검사	재판 연구원	법무 법인	법률 사무소	변호사 개업	기업	공공 부문	협회 등	법무관	기타	합계
2012년	2	2	23	9	3	8	15	2	4	1	69
2013년	1	1	21	9	2	12	2	0	5	1	54
2014년	2	2	18	13	0	8	8	0	5	2	58
합계	5	5	62	31	5	28	25	2	14	4	181

\* 출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IV. 특별전형제도의 정책적 함의 및 개선방안

##### 1. 정책적 함의: 법률가집단의 다양성 확보

『2014년 대한민국 법률 직역의 구조와 법률가 의식조사』에 따른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수준이 높은 집단 출신이 법률가직역으로 진출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은 법학전문대학원이든 사법연수원이든 불문하고 젊은 법률

<sup>50)</sup> 2015년 3월 30일 현재 집계 시점을 기준으로 병역 및 진학, 연수 등 미취업자는 약 13명이었으며 향후 이들이 취업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특별전형자들의 사회진출 비율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가집단에서 강화되고 있으며,<sup>51)</sup> 법학전문대학원이 적극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나 소수자를 선발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해소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sup>52)</sup> 이러한 관점에서 7년째 시행 중인 특별전형제도는 신체적·경제적 취약계층은 물론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은 분명하다. 법률가는 사회 정의와 공정성 및 윤리적 가치를 확립할 책무와 역할을 부담할 뿐 아니라 다양한 법률소비자의 권리와 지위를 대변할 직업적 책임을 부담한다. 고도로 전문화, 다양화, 국제화 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폭넓고 유연한 관점에서 법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법학교육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sup>53)</sup> 결국 한 사회에서 법률가 양성제도의 진입장벽을 어떻게 완화하고 다양성을 확보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법제도 및 그 본질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전제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특별전형제도의 정책적 함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고비용 교육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폭넓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법률가 양성제도 내로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한편, 법학교육 과정과 법률가집단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아울러 제한된 총입학정원에도 불구하고 정원 ‘내’ 특별전형제도를 운영하고, 사회·경제적으로 과소대표되는 계층이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기대효과가 크다.<sup>54)</sup> 가령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이미 북한 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 출신 법률가를 배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고, 신체적 취약계층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에서 물적·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51) 이재협·이준웅·황현정, 앞의 글, 405면.

52) 이재협·이준웅·황현정, 앞의 글, 405-406면.

53) 미국 로스쿨 제도 개혁을 위한 대표적인 보고서인 *MacCrate Report, Best Practices* 및 *Carnegie Report*도 로스쿨 입학생의 다양성 확보를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Michelle J. Anderson, “Legal Education Reform, Diversity, and Access to Justice”, 61 *Rutgers L. Rev.* 1011 (2009), pp. 1019-1025.

54) 조선닷컴, 2010. 12. 23.자, “[사람과 이야기] ‘꽃제비’ 탈북청년 로스쿨생 된다”; 법률신문, 2015. 8. 6.자,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성과는 법조계 다양성.”



## 2. 평가 및 한계: 운영현황 및 성과를 중심으로

### (1) 평가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제도의 운영으로 말미암아 고비용 교육구조의 문제는 일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55)</sup> 그러나 현행 특별전형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진입장벽을 충분히 낮추고 있는지, 그것이 충분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지 쉽게 답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총입학정원의 몇 퍼센트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때 비로소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진입장벽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별전형 비율과 유형의 지나친 확대는 자칫 제한된 총입학정원 내에서 일반전형자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특별전형 지원자 간에서 또 다른 차별 문제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전형 입학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나 취업현황도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3년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한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특별전형 입학자 비율이나 장학금 확대 방안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법학교육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최근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역량 강화 및 저소득계층 장학금 지원을 위해 2016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할 계획을 밝혔으나<sup>56)</sup> 국회를 비롯한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sup>57)</sup>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법학교육의 공교육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음을 주지한다면, 고비용 교육구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특별전형제도와 장학제도의 확대에 의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5)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같은 기간 (적어도 2000년대 이후) 사법시험 출원자 및 합격자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계층에 관한 통계나 특별전형 지원 대상자가 일반전형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공식적으로 집계된 통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후자의 경우도 특별전형자의 복수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뒤따른다.

56) 머니투데이, 2015. 5. 19.자, “저소득층 로스쿨생 등록금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57) 서울신문, 2015. 10. 9.자, “교육부, 로스쿨 예산 469% 늘려 ... 1인당 700만원 들여 해외 보내나.”

## (2) 한계 및 문제점: 특별전형 세부유형 및 기준의 통일성 부재

현행 특별전형제도의 유형과 기준은 여전히 복잡하고 통일성이 없어 일정한 한계와 문제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sup>58)</sup> 이는 특별전형 제도가 ‘실제적인 사회적 취성’과 ‘사회적 취약계층 분류의 다양성’이라는 다소 상반된 평가요소를 동시에 포함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저마다 사정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전형제도 시행 초기에도 이미 법학전문대학원들 간에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분류 기준이 혼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sup>59)</sup> 비록 특별전형 세부유형 및 선발기준이 각 법학전문대학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왔고, 교육부 또한 2017년 통일안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차상위계층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나 검증 방법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자율기준(안)은 종전의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을 단순히 열거하고 있을 뿐 제도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법학전문대학원들이 특별전형 소명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사실상 권한이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전형제도의 운영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몇 차례 제기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sup>60)</sup>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 3. 몇 가지 제언: 특별전형제도 개선 방안

## (1) 세부유형 및 기준의 통일

특별전형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성과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진입장벽을 넘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와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은 제한적이며 통일적이어야 한다. 특별전형제도의 도입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과

58) &lt;표 2&gt; 참조

59) 이종수, 앞의 글, 72-74면.

60) 법률저널, 2012. 2. 3.자 “로스쿨 특별전형 ‘꼼수입학’ 무더기 적발.” 이에 따르면 감사원이 2009년부터 2011년 저소득층 특별전형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보조 자료로 활용되는 재산세 납부증명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발급되는 것을 악용하여 일부 자료만 제출하고 저소득층으로 인정해 합격한 경우라든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여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월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저소득계층으로 인정받아 특별전형에 합격하는 사례가 있었다.

범위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래야만 공정한 ‘특별’ 전형의 의미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정 기준을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사회·문화적 취약계층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해질수록 ‘특별’ 전형의 의미는 퇴색되고 사회·문화적 취약성의 실질적인 반영마저 어려워진다. 특별전형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특별전형 유형의 외연을 한없이 확장시키거나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사를 백과사전식으로 망라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누구를 사회·경제적 배려계층으로 인정하고자 하는지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때다.

신체적 취약계층은 그 자체로 취약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제적 취약성까지 요구할 것은 아니지만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신체적 취약계층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재고를 요한다. 반면 신체적 취약계층 이외의 유형의 경우 ‘경제적 취약성’이 주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진입장벽이 고비용 교육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문제의 식으로 돌아가 보면 더욱 그러하다. 경제적 취약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법학전문대학원들 간에 통일적인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별전형제도를 남용<sup>61)</sup>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운영해야만 특별전형제도의 도입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생각건대 경제적 취약성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서도 출신 지역(geography), 부(wealth), 가족의 교육력(family education history), 중·고등교육정보(secondary education information)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고,<sup>62)</sup> 중·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지표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특별전형 심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sup>63)</sup> 한편 경제적 취약성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사회·문화적 취약계층 또한 상당 부분 포섭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취약성과 경제적 취약성을 단순히 정량적으로 통합하는 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sup>64)</sup> 법률가집단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다문화 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재원 경력자 등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경제적 취약성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가 양성제도로 건인하는 사회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

61) 이종수, 앞의 글, 73-74면.

62) Neil Goldsmith, *supra* note 10, pp. 336-337.

63) *Ibid.*, pp. 341-345.

64) *Ibid.*, p. 336.

## (2) 지원자의 요건심사·감독 권한 기관 설치

특별전형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세부 유형과 심사 기준의 객관성,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복지급여 비수급자의 경우 주로 건강보험료 납부실적만 요구하고 별다른 검증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상 공백을 악용한 특별전형 지원 사례는 2010학년도 및 2012학년도 입학과정에서 불거진 바 있다.<sup>65)</sup> 당시 관리·감독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의 차상위계층 심사 강화 등을 권고하기는 하였지만<sup>66)</sup> 법학전문대학원들이 건강보험납부실적, 지방세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을 포함한 재산상황을 조사할 권한을 갖지 못하므로 제도상 공백은 여전히 존재한다.<sup>67)</sup>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지원자의 제출서류 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특별전형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에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별전형 지원자의 공통기준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고, 국세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아래 실질적인 검증 권한을 가진 기구의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sup>68)</sup> 다만 이와 같은 기관의

65) 기초생활수급자나 북한이탈주민 또는 신체적 장애인 등과 달리 별도의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은 주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차상위계층임을 입증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지원자들이 명의를 형제 또는 친척에게 이전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을 낮춰 특별전형에 응시한 것이 문제되었다. 파이낸셜뉴스, 2010. 3. 15.자 “로스쿨 특별전형 편법 입학 의혹”; 머니투데이, 2010. 3. 15.자 “교과부, 로스쿨 편법입학 자체점검”; 법률신문, 2010. 3. 16. “로스쿨 특별전형 부정입학 의혹 자체조사 실시.”

66) 법률신문, 2010. 10. 8.자 “로스쿨 특별전형 입시 차상위계층 실발 심사 일제히 강화.”

67) 이후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차상위 계층의 경우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차상위계층을 복지급여 수급자와 복지급여 비수급자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차상위의료급여(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증명서를, 후자의 경우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혜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자기확인서’를 통해 스스로 “가구의 실질소득수준, 소득원, 생계책임자, 거주형태(자가·전세·월세) 등 본인이 특별전형(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체장애인 등)에 해당되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기확인서’도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에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어서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68) 미국의 경우 로스쿨 지원자들의 모든 지원서류를 통합 관리하는 Law School Admission Council (LSAC)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자의 학부성적, LSAT, 자기소개서

설치로 증빙자료의 실효적 검증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지, 그 사회적 비용은 감내할 만한 수준의 것인지 여부 등이 미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V. 마치며

이 글에서 필자는 2016학년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을 분석하여 정리하는 한편 지난 7년간 특별전형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종래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방식이 이른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과정으로 전환되었지만 석사전문대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높은 교육비용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설치인가 단계에서부터 각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입학총정원의 약 5~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입학정원의 평균 6.14%가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93.64%는 학비의 88.14%의 장학금을 지원받았으며, 제1회부터 제4회 변호사시험 전체 합격자를 기준으로 약 5.1%가 특별전형자로 로펌과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비롯해 사기업, 공공영역 등 다양한 법률가 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특별전형제도는 신체적·경제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배려 대상자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는 계층을 법률가 양성제도 내로 견인하는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엄격한 총입학정원 ‘내(內)’에서 일정 비율을 특별전형자들에게 할당하고 있다는 점과 장학금과 일부 생활비 등을 연계 지원하고 있는 점은 일반 대학의 특별전형이나 미국 로스쿨의 다양성 확보 방안과도 대비된다.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이미 우리 사회에서 신체적·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물론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등과 같이 과소대표되고 있는 계층이 법률가로 배출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현행 특별전형제도가 고비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진입장벽을 충분히 낮추고 있는지,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가 양성의 기틀이 마련하기에 흡족한 수준인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궁극적으로

---

및 추천서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본 제출 서류의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고, 각 로스쿨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지원자를 심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http://lsac.org/> 참조.

특별전형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법률가집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을 다각적으로 대변하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누구를’ ‘얼마나’ 선발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특별전형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정책적 합의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신체적·경제적 취약계층은 물론 다양한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을 고려함과 동시에 동일한 취약계층 내에서 또 다른 계층화 내지는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 운영의 엄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특별전형제도는 법률가 양성에 있어서 학력과 부의 대물림을 절연하고 법률가집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각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세부유형과 기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생각건대 특별전형의 제도적 취지가 고비용으로 인한 진입장벽 완화에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엄격한 총입학정원의 전제 하에 운영되고 있음에 비추어 본다면 결국 지원자의 ‘경제적 취약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체적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의 경제적 취약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경제적 취약성이 반영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선발 기준과 요건을 통일적으로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가령 일차적인 판단 기준을 ‘소득’으로 하되 지역, 부(富), 가족 및 지원자 본인의 교육력(教育歷)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지표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별전형 입학자들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학 제도 등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69)</sup> 한편 제도의 본질과 기능을 극대화하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및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지원자들의 실제적인 경제적 취약성 여부 등에 관한 진위 확인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심사기준과 서류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심사하는 전담 기구의 설치 등을 고려해볼직하다.<sup>70)</sup>

이 글은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조명하고 있지만, 특별전형 입학자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이나 추적 조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sup>71)</sup> 그러나 특별전형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법률가

<sup>69)</sup> Neil Goldsmith, *supra* note 10, p. 335.

<sup>70)</sup> 앞의 주 60 참조.

집단의 다양성을 확충하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충하는 질적 연구방법에 기반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크다. 이는 오늘날과 같이 사회, 경제, 문화, 지역, 성(性), 인종은 물론 사이버공간 등으로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는 사회 구조에서는 사회구성원간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공존할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취약성의 판단 자체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71) 무엇보다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심층면접이나 추적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분적으로 노컷뉴스, 2015. 12. 7.자, “반지하에서 힘들게 공부해 로스쿨 왔는데 ... 금수저라뇨?”; 오마이뉴스, 2015. 12. 9.자, “기초생활수급자 로스쿨생의 호소 “사시존치되면 ...”” 등의 기사 참조.

**[부록 1] 2016학년도 특별전형 유형(지원자격) 분류**

분류	지원자격	해당 로스쿨
신체적 취약	3급 이상	경북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4급 이상	동아대, 영남대, 인하대, 제주대
	5급 이상	경희대, 전북대
	장애등급 제한 없음(1~6급)	강원대, 건국대, 고려대, 아주대
	자녀포함(4급 이상)	한국외대
의상자	신체장애 4급 이상	동아대(경제),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경제), 연세대, 영남대, 충남대
	등급 제한 없음(1~9급)	강원대(8급), 경희대(경제), 원광대, 전북대, 한양대(경제)
	자녀포함(경제적 취약)	원광대
경제적 취약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자녀	
	+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및 자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비수급자 및 자녀	강원대, 부산대, 아주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북대, 한국외대
	차상위 우선돌봄 자격자 및 자녀	강원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및 자녀	경희대
국가 유공자	[본인] 3급 이상	전남대
	[본인] 4급 이상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인하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본인] 5급 이상	경북대, 경희대
	장애등급 제한 없음(1~7급)	강원대, 서울대, 아주대, 제주대, 중앙대
	장애등급 제한 없음(1~7급) (경제적 취약)	경희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자녀포함(경제적 취약)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한국외대, 한양대
독립 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경제적 취약)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전북대, 한양대



분류	지원자격	해당 로스쿨
사회·문화적 취약	다문화가족 자녀(경제적 취약)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중앙대, 충북대, 한양대
	농어촌지역 출신자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북대, 한양대
	이동복지시설 재원경력자	고려대, 동아대, 서강대, 성균관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북대, 제주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인정된 자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전남대, 전북대
	만 19세 이전 부모 모두/일방이 사망한 자	이화여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	전남대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허가 받은 자 중 귀화자 및 자녀		전남대, 한국외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지)청장이 대학입학특별전형자로 인정한 자		영남대, 원광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영남대, 원광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영남대, 원광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 유공자 및 자녀		원광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 - 요양·휴업·장애·간병·유족급여, 상병보상 연금		서강대(3급), 성균관대(3급), 아주대, 전남대
본인이 산업재해 3급 이상인 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산업재해 3급 이상으로 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이 사실상 부양능력 없는 자		동아대, 서강대, 아주대, 전북대(등급 제한 없음)
보훈관계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경제적 취약자		고려대, 한양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급 이상의 재해로 판정 받은 자		전남대

[부록 2] 특별전형 장학금 지급 현황

학교명	특별전형 장학금 지급 현황(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강원대	100	100	87.5	87.5	90	90	90	90	75	74	88.5	88.3
건국대	100	97.5	100	91.5	100	77	100	81.3	100	73.3	100	84.12
경북대	100	100	100	98.1	100	91.9	94.7	86.7	94.7	99.1	97.88	95.16
경희대	62.5	62.5	75	61.8	91.7	80.9	84.6	66.2	100	85.5	82.76	71.38
고려대	63.3	49.6	56.4	48.4	79.4	64	85	78.8	80.1	75	72.84	63.16
동아대	100	81.3	100	100	75.5	75.4	100	100	95.9	88.4	94.28	89.02
부산대	92.9	92.9	100	76.6	89.8	74.9	81.8	78.4	92	76	91.3	79.76
서강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서울대	70	51.3	76.3	60.5	91.1	82.1	92.9	91.1	100	97	86.06	76.4
서울시립대	100	100	100	100	100	99	100	100	100	100	100	99.8
성균관대	100	87.5	100	92.5	97.1	79.8	100	84.9	97	81	98.82	85.14
아주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연세대	100	100	100	92	97.1	94.4	100	98.1	94	99	98.22	96.7
영남대	100	100	100	100	95.8	89.6	86.7	77.3	100	91	96.5	91.58
원광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화여대	100	100	100	100	100	99	100	100	100	96.5	100	99.1
인하대	83	61	100	88	89	77	100	71	94.4	81.5	93.28	75.7
전남대	100	91.2	96.9	90.7	87	80.9	75.8	75.6	85	89.7	88.94	85.62
전북대	100	100	89	89	93.3	93.3	94	94	100	100	95.26	95.26
제주대	87.5	87.5	75	75	92.9	92.9	83.3	83.3	83	80	84.34	83.74
중앙대	100	100	100	100	95.8	95.8	100	96.5	82.6	81.6	95.68	94.78
충남대	100	100	90	90	93.8	87.5	100	100	100	100	96.76	95.5
충북대	100	100	81.3	73.6	79.2	65.6	75.0	60.8	75	75	82.1	75
한국외대	100	87.5	100	80.4	100	72.2	100	79.2	100	86.1	100	81.08
한양대	100	100	87.5	87.5	100	100	100	100	100	100	97.5	97.5
총 평균	94.4	90.0	92.6	87.3	93.5	86.5	93.7	87.7	94.0	89.2	93.64	88.14

투고일 2015. 10. 22      심사완료일 2015. 11. 25      게재확정일 2015. 12. 2

## 참고문헌

- 김복기,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위헌심사기준”, *노동법연구*, 제24호(2008).
- 김선수, *사법개혁 리포트*, 박영사(2008).
- 김창록, *로스쿨을 주장하다: 한국로스쿨 탄생의 기록*, 유니스토리(2013).
- 박근용, “학생선발의 다양성과 장학제도 현황”,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국회의원 이춘석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2013. 6. 24), 32-38면.
- 박선영, “진입장벽 높은 로스쿨은 위헌적이고, 실무교육도 미흡해”, *고시계*, 제55권 제8호(2010. 8).
- 오대성, “미국의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대한 미시건대학 판결과 그 사회적 영향 — 그루터(Grutter) 사건과 그레츠(Gratz)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3권 제3호(2012).
- 이종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의 실태와 과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2권 제2호(2011. 8), 72-73면.
- 이호선,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자료집(2015. 6. 18).
- 천도정 · 황인태, “법조인 선발제도별 법조계 진입유인 실증 분석”, *경성e북스*(2014).
- Anderson, Michelle J., “Legal Education Reform, Diversity, and Access to Justice”, 61 *Rutgers L. Rev.* 1011 (2009).
- Goldsmith, Neil, “Class-Based Affirmative Action: Creating New Model of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Washington University Journal of Law & Policy*, Vol. 34 (2010).
- Johnson, Jr., Alex M., “Knots in the Pipeline for Prospective Lawyers of Color: The LSAT is Not the Problem and Affirmative Action is Not the Answer”, 24 *Stan. L. & Pol’y Rev.* 379 (2013).
- Kahlenberg, Richard D., “A Better Affirmative Action: State Universities that Created Alternative to Racial Preferences”, *A Century Foundation Report* (2012).
- Kahlenberg, Richard D. (ed.), *America’s Untapped Resource: Low-Income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Century Foundation Press (2004).
- Karabel, Jerome, “The New College Try”, *N.Y. Times*, Sep. 24, 2007, A23면.

- Kidder, William C., “Does the LSAT Mirror or Magnify Racial and Ethnic Difference in Educational Attainment?: A Study of Equally Achieving “Elite” College Students”, 89 *Cal. L. Rev.* 1055 (2001).
- Kostka, Kent, “Higher Education, Hopwood, and Homogeneity: Preserving Affirmative Action and Diversity in a Scrutinizing Society”, 74 *Denv. U. L. Rev.* 265 (1996).
- Lustbader, Paula, “Painting Beyond the Numbers: The Art of Providing Inclusive Law School Admission to Ensure Full Representation in the Profession”, 40 *Cap. U. L. Rev.* 71 (2012).
- Malamud, Deborah C., “Class-Based Affirmative Action: Lessons and Caveats”, 74 *Tex. L. Rev.* 1847 (1996).
- Sander, Richard H. & Stuart Taylor, Jr., *Mismatch: How Affirmative Action Hurts Students It’s Intended to Help and Why Universities Won’t Admit It*, Basic Books (2012).
- Yin, Tung, “A Carbolic Smoke Ball for the Nineties: Class-Based Affirmative Action”, 31 *Loy. L. A. L. Rev.* 213 (1997).

제258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3호(2006. 2. 15).

제269회(정기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7호(2007. 10. 26).

제28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6호(2009. 4. 22).

제282회 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2009. 4. 29).

교육부 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기준 통일된다 - ‘특별전형 선발 유형 및 지원기준’ 마련, 2017학년도 실시 - ” (2015. 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입학요강, <http://info.leet.or.kr/board/board.htm?bbsid=iphak> (마지막 방문: 2015. 12. 20).

국제신문, 2015. 12. 15.자, “깊어지는 사시 갈등 ... 로스쿨 재학생 1000명, 검사첫단추 기말시험응시거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1214.99002003415> (마지막 방문: 2015. 12. 20).

노컷뉴스, 2013. 8. 6.자, “서울대 로스쿨 특별전형 ‘경제적 기준’ 강화”, <http://www.nocutnews.co.kr/news/1080153> (마지막 방문: 2015. 12. 20).

노컷뉴스, 2015. 12. 7.자, “반지하에서 힘들게 공부해 로스쿨 왔는데 ... 금수저라뇨?”,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2777301&sid1=001> (마지막 방문: 2015. 12. 20).
- 머니투데이, 2015. 5. 19.자, “저소득층 로스쿨생 등록금 국가가 전액부담한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51814592376669&outlink=1> (마지막 방문: 2015. 12. 20).
- 머니투데이, 2015. 5. 27.자, “탈북자·다문화 자녀 로스쿨 입학 쉬워진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52710235748037&outlink=1> (마지막 방문: 2015. 12. 20).
- 법률신문, 2010. 3. 16.자, “로스쿨 특별전형 부정입학 의혹 자체조사 실시”,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1705> (마지막 방문: 2015. 12. 20).
- 법률신문, 2010. 10. 8.자 “로스쿨 특별전형 입시 차상위계층 설발 심사 일제히 강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4482> (마지막 방문: 2015. 12. 20).
- 법률신문, 2015. 8. 6.자,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성과는 법조계 다양성”,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Print-News?serial=94671> (마지막 방문: 2015. 12. 20).
- 법률신문, 2015. 12. 7.자 “로스쿨 학생들 ‘법무부 사과’ 촉구 ‘전원 자퇴’ 강행”,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66> (마지막 방문: 2015. 12. 20).
- 법률저널, 2012. 2. 3.자 “로스쿨 특별전형 ‘꿈수입학’ 무더기 적발”,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6680028&tblName=tblNews](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6680028&tblName=tblNews) (마지막 방문: 2015. 12. 20).
- 법률저널, 2013. 6. 21.자 “로스쿨, 사회적취약자 운영 사례를 보나”,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7390020&tblName=tblNews](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7390020&tblName=tblNews) (마지막 방문: 2015. 12. 20).
- 서울신문, 2015. 10. 9.자, “교육부, 로스쿨 예산 469% 늘려 … 1인당 700만원 들여 해외 보내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09009006> (마지막 방문: 2015. 12. 20).
- 연합뉴스, 2015. 12. 7. “시위·고발·삭발 … 법조계 사시-로스쿨 ‘혈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7/0200000000AKR20151207085051004.H TML?input=1195m> (마지막 방문: 2015. 12. 20).

- 오마이뉴스, 2015. 12. 9.자, “기초생활수급자 로스쿨생의 호소 “사시존치되면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684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6844)  
(마지막 방문: 2015. 12. 20).
- 조선닷컴, 2010. 12. 23.자, “[사람과 이야기] ‘꽃제비’ 탈북청년 로스쿨생 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23/2010122300037.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23/2010122300037.html)  
(마지막 방문: 2015. 12. 20).
- 파이낸셜뉴스, 2010. 3. 15.자, “로스쿨 특별전형 편법 입학 의혹”, <http://www.fnnews.com/news/201003151724514622?t=y> (마지막 방문: 2015. 12. 20).
- 헤럴드경제, 2015. 12. 10.자 “[사시폐지 유예 발표 일주일②] 두 쪽으로 갈라진 법조계 … 소송 전 비화조짐까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10000135> (마지막 방문: 2015. 12. 20).
- The New York Times*, 2015. 12. 9. “Supreme Court Justices’ Comments Don’t Bode Well for Affirmative Action”, [http://www.nytimes.com/2015/12/10/us/politics/supreme-court-to-revisit-case-that-may-alter-affirmative-action.html?\\_r=0](http://www.nytimes.com/2015/12/10/us/politics/supreme-court-to-revisit-case-that-may-alter-affirmative-action.html?_r=0) (마지막 방문: 2015. 12. 20).

<Abstract>

## The Special Admission for Socially Vulnerable Students to Lower the Entrance Barrier of Law School

Choe, Yukyong\*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special admission system of law school which assigns specific quota for soci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students to lower the entrance barrier of law school. The US-style postgraduate law school system has been launched in Korea through legal reform in 2009. Compared to the precedent judicial examination, however, the postgraduate law school system has been often criticized because of its expensive tuition. As a result, special admission was introduced as one of the affirmative actions for physically, economically, socially, and culturally vulnerable groups. The special admission not only aims to lower the entrance barrier of law school but also guarantee diversity of legal professionals in the Korean society so that the post-reform legal professional training system can enhance access to social justice and promote public trust to the legal system.

Despite the annual cap of the law school nationwide, each law school has been allocating 5 to 10 percent for the special admission quota since 2009. According to the statistics, approximately 6.14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law school students has entered the law school through special admission in last 7 years. The beneficiaries of special admission reached about 5.1 percent of the bar passers from 2011 to 2014. The occupational distribution extends to a wide variety including law firms, private lawyer's office, private sector and public legal institution, etc. Nevertheless, the author concludes that it is too early to evaluate whether the current special admission system is sufficient to lower the entrance barrier of law school for the underrepresented groups in our society.

---

\* J.S.D./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Ewha Womans University Law School.

Meanwhile, the study encompasses specific standards and criteria of the special admission which have been managed by the law schools. While the relating laws and regulations delegate all the authority to finalize distinctive standards to the each law school, the special admission has been operated in a different and complicated manner by distinctive law schools. Moreover, law schools are not entitled to inspect or monitor the authenticity of the evidential documents that the applicants are required to submit for proving their economical status.

The author emphasizes that it is inevitable to make more concrete standard based on financial need. More sophisticated factors such wealth and educational history of family and the applicants should be considered not to mention 'income'. The study also stresses that both the extent and criteria of the special admission should be narrowed down to prevent reverse discrimination. Also, the author suggests to establish an institution which is authorized to investigate or inspect the authenticity of all the documents with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transparency and the fairness of the special admission process nationwide. The article consists of legal grounds of the special admission and the specific standards (Chapter II.), empirical approaches of the current condition and outcomes (Chapter III.), and the ramifications and suggestions (Chapter IV.).

Keywords: special admission, postgraduate law school, legal professional training system, class-based affirmative action, diversity